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14 선고 2024재나5002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8. 23 선고 2024다255861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6. 14 자 2024재나50027 결정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24 자 2019재나127 결정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6. 13 선고 2019나310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12. 19 선고 2018가소24049 판결

전문

원고(재심원고), 항소인

A

피고(재심피고), 피항소인

B

변론종결 2024. 5. 10.

판결선고 2024. 6. 14.

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. 12. 19. 선고 2018가소24049 판결

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나310 판결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,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

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피고(재심피고)는 원고(재심원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1,05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재심대상판결이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19. 9. 2.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원고의 주장 전부를 살펴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이 없으므로,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.

재판장 판사 박광우, 판사 황병헌, 판사 김춘호